사람이 반갑습니다
휴먼시티 수원

장애인전용주차구역
이용 안내문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'주차가능'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.
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.

정부는 **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'장애인전용주차구역' 을 설치·운영**하고 있습니다.
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**'주차가능'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**할 수 있고, '주차가능' 표지가 있더라도 **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.** (위반시 과태료 10만원)

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'주차불가'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'주차가능'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또한, 동법 개정으로 **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**
(위반시 과태료 50만원)

수원시